인도네시아	1 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정기)

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□ **무역 • 투자, 2월부터 일부 수입품 통관 절차 간소화 예정**

○ 인도네시아 정부는 빠르면 2월 1일부터 일부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힘

○ 이러한 방침은 화물의 체류 기간을 단축시키고 통관의 신속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지난 26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함

○ 대상이 되는 품목은 「수입 규제품 목록」에 게재돼 있는 5,229개의 품목 중 시멘트와 타이어, 진주, **원예 농작물** 등의 3,466 품목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보건·안전·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통관 간소화의 조건이 됨

○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된 3,466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, 사전에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를 하면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수입 화물을 보세구역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이 나중에 이 화물을 확인함

○ 수입 통관 서류의 원본을 모두 보관 해 두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, 재무부 관세국이 불시에 서류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

○ 무역부 국제무역국 오께 누르완 국장은 “인도네시아 수입품의 70%는 원자재가 차지한다. 수입 절차의 간소화는 수출 확대로도 연결 된다”고 설명함

* 출처 : 자카르타포스트(2018.01.26.), 자카르타경제신문(2018.01.31.)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인도네시아 식품의 라벨링 규정 주의 사항

○ 제품 라벨링 의무에 대한 무역부 규정 No.62/M-Dag/Per/12/2009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“할랄(Halal)"을 표기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함

- 제품의 할랄 라벨링의 경우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서를 받은 제품에만 허용 되고 있음
- 할랄 라벨 신청은 식품의 등록 심사 시 할랄 인증서와 제품 디자인 라벨링을 함께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

○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,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되어 있음

○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조건을 확인 하고 수출 준비에 주의가 필요

-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품 :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돼지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“MENGANDUNG BABI" (돼지고지 함유)의 표시가 있어야 함
- 가당연유 :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“Perhatikan! Tidak Cocok Untuk Bayi Sampai Usia 12 bulan” (주의!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)의 표시가 있어야 함
- 알코올 음료 : 라베링에 “MINUMAM BERALKOHOL, DI BAWAH UMUR 21 TAHUN ATUA WANITA HAMIL DILARANG MINUM" (21세 미만 및 임산부 섭취 금지)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
- 방사선 조사된 포장 식품 : “RADUARA : PANGAN IRADIASI” (방사선조사식품)의 문구가 있어야 함
- 유전자 조작 식품 : “PANGAN REKAYASAGENETIKA" (유전자조작식품) 문구가

포함 되어야 함

- 할랄 라벨 : 포장재에 “Halal" 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서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로고나 할랄 표기를 할 경우 통관에 있어 불허를 받는 점에 주의가 필요

* 출처 : PKBPOM No 12 Tahun 2016 tentang Pendaftaran Pangan Olahan

2. 수입 통관 시 준비 서류

○ 식품 등록(ML) : 식품의 인도네시아 수입을 위해 식약청(BPOM)에 등록 절차를 거쳐 ML을 등록 완료 하여야 함

○ 수입신고서(SKI) : 식약청(BPOM)으로부터 ML의 등록을 완료 하였더라도 수입 시 필히 식약청(BPOM)에 수입신고서(SKI, Surat Ketrangan Impor)를 발급 받아야 함

○ 선적 전 검사 신고(LS) : LS는 Laporan Suveyor로 영어로 표현 하면 Request for Inspection의 서류로 이는 수입 시 수출지에서 상품의 상차 선적 이전에 필히 인도네시아의 SUCOFINDO에 선적 전 검사를 신청하고 한국의 대리 검사소에서 상품을 확인 검사 후 선적 되어야 하며 이 증명서를 수입 통관 시 제출 하여야 함

○ 이는 모든 식품류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나 거의 모든 식음료 품목에 적용 되고 있어 필히 HS code를 확인 하여 의무 사항인지 사전 주의와 준비가 필요함